

해남자유무역항 조세제도 혁신 살펴보기

News Flash
China Tax and Business Advisory
2020년 06월
Issue 12

개요

2020년 6월 1일 중공중앙, 국무원은 <해남자유무역항건설총체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안>은 무역 자유화/편리화, 투자 자유화/편리화, 국경간 자금유동 자유화/편리화 등 11개 방면의 총 39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과 2035년 2개의 단계적 목표를 지정하여, 해남도가 강력한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고도의 자유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조세제도의 5개 목표는 무관세, 저세율, 과세 간소화, 법치 강화, 단계 구분입니다. 해당 5개 목표에 대하여 제정된 조세정책은 2025년과 2035년 2개 단계적 목표를 관통하여 각각의 중점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플래시에서는 <방안> 중 조세제도 관련 주목할 점을 소개하고, PwC의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무관세

<방안>은 해남을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무관세의 특수 해관 관리감독구역으로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무관세"는 무역원가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만, 상응하는 무역위험통제의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방안>은 "1선 개방, 2선 관리, 도 내 자유"의 제도 설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안> 제도 설계에 따르면, 1선 항구에서 해관은 공공위생안전, 국경생물안전, 식품안전, 제품품질안전 등 "비관세" 사항 관리 감독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신고 수속이 간소화되고, 해외 화물의 자유무역항 반입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화물이 입도(入島)한 후에 "무관세" 화물은 해관 관리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가공무역 "보세" 화물의 해관 관리감독 모델과 구별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상응하는 수속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생산요소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제도 설계 이념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普华永道

특히, 장려형 산업기업이 생산한 수입원자재 미포함 화물 또는 수입원자재 포함 화물(해남자유무역항에서의 가공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것)의 경우, "2선" 내륙 반입 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규정에 따라 수입증치세/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원자재는 해외로부터 최종 수입되어 국내로 반입될 때까지 "무관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조치는 장려형 산업기업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2 선" 관리

- 화물, 택배 물품 내륙 반입 시 → 규정에 따라 관세, 수입증치세/소비세 징수
- 장려형 산업기업이 생산한 수입원자재 미포함 화물 또는 수입원자재 포함 화물(해남자유무역항에서의 가공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것)의 내륙 반입 시 → 수입관세 면제, 규정에 따라 수입증치세/소비세 징수

해남자유무역항

- 해외에서 선적하고 해남항에서 환적, 재포장하여 다시 다른 국가/지역으로 운송하는 중계화물 → 해관 수속 간소화
- 화물이 도(島) 내 위치 → 보관기한 없음, 자유롭게 보관장소 선택 가능
- "무관세" 화물 실시 → 일상적인 해관 관리감독 면제

해외: "1 선" 개방

- 화물, 물품(금지/제한품목 제외) → 자유롭게 반/출입, 해관은 법에 의거 관리감독
- 해남자유무역항 수출입 과세상품목록 외 화물 → 수입관세 면제
- 복합운송 B/L 로 운송되는 환적화물 → 세금 부징수, 검수 면제
- 편리하고 효율적인 해관 관리감독 실행 → 고표준국제무역 "단일 창구" 건설

기존 해관특수감관구역에서 "그물형" 관리를 실시 했듯이, <방안>은 2025년까지 양포(洋浦) 보세항구 등 특수감관구역을 먼저 "1선" 개방, "2선" 관리 제도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뒤, 섬 전체에 대해 "봉관(封关)" 실시 적기를 평가하여, 조건이 성립된 후에 섬 전체에 대해 봉관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섬 전체 봉관 전에는 일부 수입화물/물품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관세"가 실현될 것입니다.

| 봉관 전 | 봉관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명확히 면세 제외를 규정한 물품 및 국가규정 수입금지 물품을 제외한, 하기 화물/물품은 화이트리스트 또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통해 수입관세, 수입증치세/소비세 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 자체 사용 설비의 수입 2) 도(島) 내 수입한 교통운송, 여행업에 사용되는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 및 요트의 수입 3) 자가사용품 생산에 사용되거나 "원자재수입-국내생산-완제품수출" 모델에서 생산가공을 위해 소비되는 원/부자재의 수입 4) 도(島) 내 거주민이 소비하는 수입상품 • 이 외, 출도(出島) 면세 쇼핑 한도를 연간 1인당 10만 RMB 까지 완화하고, 면세 품목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과세상품목록 등재 품목 이외의, 해관이 자유무역항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해남도 섬 전체 봉관과 "무관세" 실행은 전무후무한 "새로운 시도"로, 국제무역의 편리성, 자유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세율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에 대해, 각각 기업소득세 우대세율과 개인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5년까지 | 2035년까지 |
|-------|---|--|
| 기업소득세 | 본 방안 발표일부터, 해남자유무역항에 등록하고 실제 영업에 종사하는 장려산업기업에 대해 15%의 낮은 세율 적용 | 해남자유무역항에 등록되어 실제 영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하는 산업 제외), 15%의 낮은 세율 적용 |
| | 해남자유무역항에 설립된, 여행업, 현대서비스업 및 고신기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2025년까지 신규 증가된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 | |
| | 조건에 부합하는 자본적지출에 대해, 지출 발생 당기에 일시공제 또는 가속상각 허용 | |
| 개인소득세 |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에 대해, 개인소득세 15% 세율을 초과하는 실질세부담에 대해 면세. 상기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에 대한 목록 관리는 해남성 상재정부, 세무총국이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 | 한 과세연도 중 누적하여 183일 이상 해남자유무역항에 거주한 개인이 취득한 해남자유무역항 범위 내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에 대해, 3%, 10%, 15%의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 과세. |

기업소득세 우대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장려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 징수, 2035년까지 추가적으로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하는 산업 이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 15%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추진. 해남자유무역항의 장려산업목록은 대체로 현행 장려산업목록의 내용(예: <산업구조조정가이드목록>의 장려산업, <장려외상투자산업목록> 등)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 또한 해남성의 특징과 성격을 고려하여 여행업, 현대서비스업 및 고신기술산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방안>은 여행업, 현대서비스업, 고신기술산업 기업에 대해, 2025년까지 신규 증가된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함. 현행 기업소득세법하에서는 중국거주자기업의 글로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방안>은 이 제도를 넘어서, 여행업, 현대서비스업, 고신기술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2025년까지 그 신규 증가된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를 실시함.

개인소득세의 경우, <방안>은 2가지 방면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일부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2025년까지,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에 대해 개인소득세 15% 세율을 초과하는 실질세부담에 면세를 허용. <방안>의 내용을 보면, 해남자유무역항의 15%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은 2019년 발표된 GBA(Great Bay Area, 大湾区)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과 비교하여:
 - 1) GBA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은 해외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해외인재여야한다는 규정이 없음.
 - 2) GBA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은 "선징수, 후보조"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방안>의 15%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은 실질세부담 중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바로 면세를 하는 것으로, "선징수, 후보조"의 방식을 통할 필요가 없음. <방안>의 이 우대 혜택이 실행되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우대 혜택 향유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2035년까지, <방안>은 과세연도 중 누적하여 183일 이상 해남자유무역항에 거주한 개인이 취득한

해남자유무역항 범위 내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에 대해, 3%, 10%, 15%의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함. 이는 현 개인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에 대해 3~45%의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 경영소득에 대해 5~35%의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큰 혁신으로, 관련 세율표를 전면 개정해야 함. 향후 실무적으로 해남자유무역항 거주일수와 원천소득 판정을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과세 간소화

<방안>은 중국 세제개혁 방향을 결합하여,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과세 간소화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세목제도를 개혁하여 간접세비율을 낮추고, 세목구조를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개편하며, 과세요소를 최적화하고, 세부담을 명확히 인하하며, 소득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재정수지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며, 더욱 우수한 납세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세목제도 간소화를 모색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안>의 기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해남도 전체에 대해 적절히 봉관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증치세, 소비세, 차량구치세, 성시유희건설세 및 교육비부가 등 다양한 세목을 간소화 및 통합하고, 소매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로 전환하여 세목통합의 특수세제제도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상기 증치세 등 세금비용은 모두 화물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모두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합니다. 현재의 과세 시스템에서, 이러한 세목은 별도로 계산하고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통합계산, 통합신고를 할 경우, 신고납부절차 간소화와 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효율과 퀄리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목 통합후 판매세는 화물과 서비스의 소매거래 단계에서 일괄 징수되는데, 이는 해남자유무역항 내에서 더이상 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현재 중국의 유전세 세제와는 완전히 다른 판매세(현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를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해남자유무역항만의 독특한 세제 우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과세 간소화 방안의 모색과 정책적 우대 혜택의 실행이 해남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조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중국의 현행 세목 중, 증치세, 소비세 등 간접세의 조세 비중이 큰 편입니다. <방안>이 제시한 "간접세 비율 인하", "세부담을 명확히 인하" 등 과세 관소화와 관련된 제도 설계에 따르면, 판매세 통합 징수 후, 기업의 간접세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남지방의 조세관리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2035년까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서, <방안>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중앙과 지방의 공동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은 남겨두었으나, "판매세 및 기타 국내 세목의 수입은 지방수입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세목 중 일부는 중앙세(예: 소비세, 차량구치세)이며, 일부는 중앙과 지방이 공유(예: 증치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재정수입 구분의 중대한 개혁입니다. 해남이 통제할 수 있는 지방 수입의 안정은 해남이 자유무역항 건설에 따른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이행 할 수 있는 재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안>은 해남이 자율적으로 일부 정부성 기금의 감면, 면세, 과세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행정사업성 비용징수항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남은 또한 보조금 정책의 프레임을 추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국이 보조금 분야의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법치 강화

<방안>은 15% 기업소득세 혜택, 15% 개인소득세 혜택, 3%, 10%, 15%의 개인소득세 단계별 누진세율 정책을 제시하여, 기업이 해남자유무역항 현지에 확실하게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현지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인재를 유치하고 현지 경제에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질 경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허위 고용관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 등록되어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한 과세연도 중 누적하여 183일 이상 거주한" 등의 전제를 설정하였으며, 세수관리부서로 하여금 실제 경제활동소재지와 가치창조지 원칙에 따라 납세 행위를 평가 및 예비통보하여 실제경영지, 소재지 거주판정 기준을 통해 탈세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 조세 측면에서 조세정보공유를 강화하여 해남자유무역항이 "탈세천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몇년간 국제조세관리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원잠식과 이익이전 방지를 강화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기타 조세 관련 규정

해남의 선박운수업과 항공운수업 촉진을 위해, <방안>은 다음과 같은 조세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 효과적인 관리감독 및 위험 통제를 전제로, 경내 건조된 선박이 "중국 양포강"에 등기하고 국제운수에 종사할 경우, 수출로 간주하여 수출환급을 함.
- 양포강을 중계항으로 하여 국내/외 무역 운수에 종사하는 경내 선박에 대해, 본 항편에 필요한 보세유를 주유하는 것을 허용; 본 항편에 필요한 현지 생산 연료 주유에 대해 수출환급정책 실행.
- 조건에 부합하는 양포강을 경유하여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항 환급 정책 시행.
- 해남을 출입하는 항공편에 보세항공유 주유 허용.

이 외에도, <방안>은 중국 국제소비재박람회, 국가급 전시회 개최 기간 내 해외 전시품 수입 및 판매에 대한 면세정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해남자유무역항 <방안>에 포함된 수많은 조세 혁신 조치는 무관세, 기업소득세의 저세율 혜택과 일부 산업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면세, 개인소득세 저세율, 유전세 통합 및 일부 소매거래에 대한 판매세 전환, 소득세 이외의 기타 국내 세목 수입과 판매세의 지방수입화 등 전례없는 돌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 제도와 재정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이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해남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반영합니다.

<방안>은 가이드성 문서로, 조세 정책에 대해 미래 발전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세부 사항과 실행에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해남에 투자할 의사가 있거나 해남으로 회사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방안>이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후속적인 조세정책의 출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자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정책, 경영모델 조정, 그룹구조, 인력배치 등을 결합하여, 해남자유무역항의 정책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재세부문이 이러한 정책들을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업 및 재세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실행 조치에 대해 상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이 이러한 혜택과 편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PwC팀은 지속적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소통하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PwC의 해석과 관찰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Directo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태정 (86) (10) 6533-5733 taejeong.t.you@cn.pwc.com
(TP) 박영인 (86) (10) 6533-3891 young-in.y.park@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장병일 (86) (21) 2323-5491 byungil.j.jang@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소주 (회계감사 & Tax) 황홍석 (86) (512) 6273-1850 hongseok.h.hwang@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One-stop tax information platform of Shui Jie 2.0 version
Your exclusive tax think tank



iPhone
(iOS 10 or above)



Android
(Android 6.0 or above)



- For Android users, please scan the QR code to access to Tencent App store.
- Shui Jie web portal - <https://taxnews.pwchk.com>.



In the context of this News Flash, China, Mainland China or the PRC refer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excludes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aiwan Regi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is not meant to be comprehensive.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laws can vary widely based on the specific facts involved. Before taking any action, please ensure that you obtain advice specific to your circumstances from your usual PwC's client service team or your other tax advisers. The materials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ere assembled on 9 June 2020 and were based on the law enforceable and information available at that time.

This China Tax and Business News Flash is issued by the **PwC's National Tax Policy Services** in China and Hong Kong, which comprises of a team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dedicated to monitoring, studying and analysing the existing and evolving policies in taxation and other business regulations in China, Hong Kong, Singapore and Taiwan. They support the PwC's partners and staff in their provision of quality professional services to businesses and maintain thought-leadership by sharing knowledge with the relevant tax and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academies, business communities, professional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Long Ma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Please visit PwC's websites at <http://www.pwccn.com> (China Home) or <http://www.pwchk.com> (Hong Kong Home) for practical insights and professional solutions to current and emerging business issues.

www.pwccn.com